

예산총칙

202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535,184,770	46,055,543
일반회계	1,325,341,860	39,760,256
특별회계	209,842,910	6,295,287
공기업특별회계	154,795,860	4,643,876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9,310,349	579,31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7,528,120	1,725,84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7,957,391	2,338,722
기타특별회계	55,047,050	1,651,412
주택사업특별회계	483,764	14,513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5,392,935	161,78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0,000	300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2,037,384	61,122
교통사업특별회계	13,387,528	401,626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31,092,930	932,788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642,509	79,27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759,349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8,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